	(사용자 "갑")	(공급자 "을")		
상 호 명진노인복지센터		상 호	주식회사 케어비지트	
주 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금 군산병 미전길 335-1	주 소	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36 동성빌딩 5층 504-1호	
대표자	이 형 속 (식인)	대표자	이 상(구)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하단1 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제공된 솔루션 운영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솔루션 범위

- 1)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해야 하는 범위는 <#하단1>의 범위이다.
- 2) "갑"은 "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조1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범위의 내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가는 별도 합의로 정한다.

【 제3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무료로 한다.

【 제4조 】월 사용료 (2015년 03월 부터)

금33,000원(금삼만삼천원), 부가세포함

자동이체(CMS)를 이용 않을시는 매월 20일까지 하단에 명시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여야 함. (하단 자동이체동이서 생략)

【제5조】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쌍방의 요구가 없을 시는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은 1개월 전 공문으로 계약 기간의 변경을 상호 요청 하고, "갑"과 "을"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갑"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이 종료(중단) 되었을시는 자동계약 해지된다.

【제6조】상호협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하단1>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사항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신의 성실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의 조정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 1) 본 계약은 해지통지(FAX 또는 내용증명)가 상대방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해지된다.
- 2) 본 계약이 해지된 때에 각 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해지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해지시 까지의 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관련 자료 등을 "갑"에게 제출하고, 정산은 계약 해지 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하여 정산한다.
- 4) 계약의 해지가 "을"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을"은 계약해지로 인한" "갑"의 손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5)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불가항력

천재지변, 파업, 정부조치 등의 불이행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유(불가항력)로 인한 본 계약의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는 면책된다. 단, 불이행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상황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고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제9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얻은 상대방의 정보 또는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해 배상 하여야 한다.

【 제10조 】양도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를 제 제3자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에 각자 기명 날인하고 각자 보관 하기로 한다.

#하단1. 용역의 범위 및 형태.

- http://www.carevisit.net 에 있는 재가지원 솔루션 제공부분에 한 한다.

자동이체(CMS) 동의서 (월사용료를 기재된 은행에서 매월 20일 출금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そり세(CN	13) 중의시 (철자용표를 기세년	- S M M - M = 20 E E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구분	개인	생년월일		계좌번호	
	법인	사업자NO		예금주 폰번호	
수탁업체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위탁업무내용	CMS 자동이체를 통한 월사용료 수납
176/1					